

#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운영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- 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(Legal Clinic, 이하 리걸클리닉이라 한다)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이라고 함)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수행한다. 본 지침은 리걸클리닉의 조직, 구성, 권한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.
- ② 리걸클리닉을 통하여, 안으로는 본 대학원 학생들이 실제사건에 접하고 법률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며, 밖으로는 지역사회에의 봉사 등 로스쿨학생들의 공익활동과 실무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리걸클리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무료법률상담
2.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연습
3. 사례수집 및 해결을 위한 실무형 기록의 개발
4. 지역사회 법률상담 봉사
5. 실무활동을 위한 자료집의 발간
6. 본 대학원 실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원장이 부여한 기타 업무

## 제3조 (소재지)

리걸클리닉은 사무소를 본 대학원에 둔다.

## 제4조 (조직)

- ① 리걸클리닉에는 리걸클리닉센터장(이하 센터장이라 한다)과 상근직원 및 사무조교를 둔다.
- ② 리걸클리닉 내 학생상담팀을 둘 수 있다.
- ③ 리걸클리닉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 실무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. 본 대학원 실무교육위원회 소속교수는 리걸클리닉 운영위원이다.
- ④ 리걸클리닉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외부 자문위원은 현재 변호사 및 노무사로 활동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## 제5조 (센터장)

- ①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센터장의 유고 시에는 본 대학원 교무부대학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## 제6조 (상근직원 등)

- ① 리걸클리닉에는 운영과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을 1인 이상 둔다.
- ② 상근직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7조 (법률상담)

- ① 리걸클리닉의 법률상담은 무상으로 행한다.
- ②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로 구성되는 리걸클리닉 운영위원은 본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.
- ③ 매 학기 담당교수의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고려하여 법률상담시간을 정한다.
- ④ 리걸클리닉의 무료상담과 관련하여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, 학습·연습·봉사 목적의 상담보조원으로서 본 대학원생이 참여한다.
- ⑤ 법률상담의 이용은 재학생, 동문, 교원, 직원 등 경희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되, 그 이용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.
- ⑥ 상근직원 또는 상담보조원은 법률상담 일시, 방법, 상담자의 인적 상황, 상담내용의 개요를 전자상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 (실무연습)

- ① 리걸클리닉에서 본 대학원 실무교육강좌의 일부강의는 그룹세미나의 형태로 리걸클리닉에서 행해질 수 있다.
- ② 리걸클리닉은 실무형 기록을 개발하여 본 대학원학생들의 실무교육을 보조한다.
- ③ 리걸클리닉은 주요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본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9조 (공익봉사)

- ① 리걸클리닉은 공익적 성격의 송무를 보조하는 등 외부에서 봉사할 수 있다.
- ② 리걸클리닉은 연 1회 이상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민 법률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③ 리걸클리닉은 제1, 2항의 송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봉사활동자료를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제1, 2항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는 받지 않는다. 단,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지급은 예외로 한다.

#### 제10조 (자료집 등)

- ① 리걸클리닉은 매년 1회 이상 법률상담, 그룹세미나, 법률문제검토 사례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자료집에 상담자료나 본 대학원생의 학습자료 등을 게재하는 경우,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내용을 일반화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신상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11조 (예산 편성과 편성지침)

- ① 센터장은 매년 소요 예산안을 수립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리걸클리닉의 예산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본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